

◆ 환경부공고제2002-128호 ◆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  
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개정(2002. 2. 4. 법률 제6653호)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등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방법을 합성수지재질 외의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한정함.
- 나. 포장재질 중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 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할 제품의 종류를 정함.
- 다.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대한 연차별 줄이기 목표를 정함.
- 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검사 전문기관에 한 국자원재생공사,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 등을 추가함.

3. 기타문의

전화 : 2110-6915, FAX : 504-9210

◆ 환경부공고 제2002-139호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그밖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사항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임대 또는 폐수수탁업자의 변경사항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함.
- 나. 대학연구소 등 검사능력이 있는 기관을 수질오염물질 오염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규모의 적정화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설치사업 기본계획 승인 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검토를 받도록 함.
- 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함.

다. 행정처분권자가 감경기준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감경사유를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 또는 기타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문화함.

바. 골프장에서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프장의 관리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비영리골프장에 대하여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도록 함.

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고,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관리토록 함.

### 3. 기타문의

전화 : 02-504-9253, FAX : 02-504-5445

## ◆ 환경부공고 제2002-142호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안)

#### 1. 제정이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에서 종합적인 대기오염저감대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조속히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나.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총량삭감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14조, 제17조)

라. 총량삭감 대상 사업장은 대기배출부과금 및 연료의 황함량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할당받은 배출총량 중 일정부분은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제16조)

마. 관리권역내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제작·판매하고,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권역내 운행하는 “특정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특정자동차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강화된 기준이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을 의무화 함.(안 제20조)

사. 운행차 정밀검사 결과 배출가스가 특정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시·도지사는 총량삭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

요한 경우 조례로 의무 미이행 자동차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 악화가 예상될 경우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3조, 제24조)

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친환경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관리권역내 유통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차. 환경친화형 도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 제30조)

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관계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35조)

3. 기타문의

수도권대기질개선기획단

전화 02-504-9285, FAX 02-504-9208,

전자우편 moepark@me.go.kr

○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한글화 의견제출처 : 위 의견제출처 및 법제처로 하시기 바람. 법제처 주소 : 서울 종로구 새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 02-724-1445, 팩스 02-720-3762)

◆ 환경부고시제2002-156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부산광역시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고시

1. 실천계획 적용범위

가.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나. 대상오염물질 : 오존, 이산화질소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의 80%이하 수준

나. 목표달성기간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고시 후 10년 이내

3. 실천계획 주요골자

가. 부산광역시의 대기환경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에 적합한 부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운영

(2) 효율적인 지역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대기배출 시설 관련업무 위임, 대기측정망 이관 등 대기관리업무 증가에 적합한 행정조직 개선

(3) 대기오염의 장·단기적인 대응을 위한 대기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 광역적인 대기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산·경남권 광역대기관리협의체 운영

- (5) 지역대기오염의 현황과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재배치 및 확충, 이동식 대기오염측정차량 확보
- (6)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원자료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화
- (7) 지역환경영향 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운영
- (8) 시정전반의 환경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ISO인증 추진

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자동차 중간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
- (2) 자동차 공회전 억제를 위한 조례 제정
- (3) 천연가스버스 등 무·저공해 자동차 도입확대
- (4)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강화 및 상시감시 시스템 도입
- (5) 자가용 이용억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교통수요관리정책 추진
- (6)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교통혼잡지역 해소, 도로망 개선, 경전철 도입 등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개선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 (2) 도장부분 및 주유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저감대책 추진
- (3)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먼지발생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관리 강화

라.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도시공원의 조성 및 공원간 네트워크화
- (2) 간선도로의 녹지 확대 및 공단주변 완충녹지

확대

- (3) 주요 간선도로에 대기오염에 강한 수목 식재
  - (4) 저공해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
- 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시민의 합의와 협조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4. 행정사항

가. 부산광역시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수록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년도(2009년)내에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나. 승인일로부터 매익년 2월까지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매 2년마다 실천계획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서 및 실천계획 수정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2-1호 ◆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 시설공동처리구역지정

##### 1. 공동처리구역

- 구분 :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 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초전리 및 용현면 선진리 일원
  - 면적 : 1,486,774㎡
- 비 고 : 산업단지면적(1,601,317㎡) 중 주거용지 114,543㎡ 제외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사천시, 경남개발공사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2-2호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  
사업계획승인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11,400㎡/일(2,850㎡/일×4기)

○ 설치면적 : 16,789㎡

3. 예상사업기간 (산업단지 분양계획에 따른 단계별 시설설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용량	2,850㎡/일×2	2,850㎡/일×1	2,850㎡/일×1
누계	5,700㎡/일	8,550㎡/일	11,400㎡/일
기간	2002~2004. 8	2004. 9~2005. 12	2006이후

4. 사업지역 :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2번지 진사지방산업단지내

5. 분야별 예상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25,476백만원
- 운영관리비 : 731.6백만원

6. 예상원인자의 범위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구역내의 발생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입주업체

7.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50%), 경남개발공사(5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부담

8.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는 원인자인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오·폐수발생량 및 오염물질항목별 부하량을 기준으로 배분

9.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에 대한 관계서류는 사천시, 경남개발공사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부고시제2002-161호 ◆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23일  
환경부장관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고시

1. 사업목적

괴산군 증평읍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말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변경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
- 주소 : 충북 괴산군 증평읍 창동리 100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위치 : 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일원
- 부지면적(변경)
  - 당초 : 75,275㎡
  - 변경 : 86,759㎡(증 : 11,484㎡)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칭 :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변경)

- 당초 : 30,000㎡/일
- 변경 : 17,000㎡/일(감 : 13,000㎡/일)
- 처리방법(변경)
  - 당초 : 표준활성슬러지법
  - 변경 : 질소·인 제거 고도처리공법(DNR 공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변경)

- 예정배수구역
  - 당초 : 8,200.0ha
  - 변경 : 4,276.3ha(감 : 3,923.7ha)
- 예정처리구역
  - 당초 : 644.69ha
  - 변경 : 990.00ha(증 : 345.31ha)

마. 사업시행기간 : 2002년 ~ 200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사. 기타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건설도시과(043-835-344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 환경부고시제2002-163호 ◆

낙동강계수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수계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

연번	구간명	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그영향을주는영역	시·도 경계
1	낙본A	낙동강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강원도-경상북도 경계지점
2	낙본B	낙동강수계구간중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점후부터 봉화군과 안동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연번	구간명	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그영향을주는영역	시·도 경계
3	반변A	반변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로부터 영양군과 청송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4	용전A	용전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시흥천 합류점까지 전구간 및 유역	
5	길안A	길안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로부터 청송군과 안동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6	반변B	반변천 수계구간중 영양군과 청송군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7	미천A	미천 수계구간중 봉화군과 안동시 경계점후부터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8	낙본C	낙동강 수계구간중 봉화군과 안동시 경계점후부터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9	내성A	내성천 수계구간중 방원지로부터 영주시와 예천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0	내성B	내성천 수계구간중 영주시와 예천군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1	금천A	금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내성천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2	영강A	영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3	이안A	이안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영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4	병성A	병성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5	위천A	위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군위군과 의성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6	위천B	위천 수계구간중 군위군과 의성군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7	낙본D	낙동강 수계구간중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점후부터 상주시와 구미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8	감천A	감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김천시와 구미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19	낙본E	낙동강 수계구간중 상주시와 구미시 경계점후부터 구미시와 칠곡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20	낙본F	낙동강 수계구간중 구미시와 칠곡군 경계점후부터 성주군과 고령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경상북도-대구광역시 경계지점
21	금호A	금호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로부터 영천시와 경산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22	금호B	금호강 수계구간중 영천시와 경산시 경계점후부터 경산시와 대구시 수성구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경상북도-대구광역시 경계지점
23	금호C	금호강 수계구간중 경산시와 대구시 수성구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경계지점
24	금호G	낙동강 수계구간중 성주군과 고령군 경계점후부터 회천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대구광역시-경상남도 경계지점
25	회천A	회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로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경상북도-경상남도 경계지점
26	황강A	황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남하교(거창군 남하면 무룡리)까지 전구간 및 유역	
27	황강B	황강 수계구간중 남하교(거창군 남하면 무룡리)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28	낙본H	낙동강 수계구간중 회천 합류점후부터 남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29	남강A	남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함양군과 산청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30	남강B	남강 수계구간중 함양군과 산청군 경계점후부터 임석천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31	남강C	남강 수계구간중 임석천부터 합류점전부터 판문천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32	남강D	남강 수계구간중 판문천 합류점전부터 진주시와 의령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33	남강E	남강 수계구간중 진주시와 의령군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34	낙본I	낙동강 수계구간중 남강 합류점후부터 밀양시 청도천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35	낙본J	낙동강 수계구간중 밀양시 청도천 합류점후부터 밀양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36	밀양A	밀양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청도군 청도천 합류후 상동교까지 전구간 및 유역	경상북도-경상남도 경계지점
37	밀양B	밀양강 수계구간중 청도군 청도천 합류후 상동교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38	낙본K	낙동강 수계구간중 밀양강 합류점후부터 양산천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연번	구간명	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그영향을주는영역	시·도 경계
39	낙본L	낙동강 수계구간중 양산천 합류점후부터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경상남도-부산
40	낙본M	낙동강 수계구간중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하구언1점까지 전구간 및 유역	광역시 경계지점
41	낙본N	낙동강 수계구간중 김해시 대동면과 부산시 강서구 경계점(대저수문)후부터 하구(녹산수문)까지 전구간 및 유역	

※ 비고 :

1. 유역은 집수유역을 말하며, 다른 수계구간의 유역은 제외된다.
2. 시·도 경계는 해당 수계구간의 중점이 시·도 경계인 것을 말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2-1호 ◆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2-2호 ◆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아산시 아산T·C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에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아산시 아산T·C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2002년 11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아산T·C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변경·고시

아산T·C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

1. 공동처리구역

- 구분 : 아산T·C지방산업단지
- 대상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 일원
- 공동처리구역(m<sup>2</sup>)
  - 변경전 : 2,021,475m<sup>2</sup>
  - 변경후 : 2,021,077m<sup>2</sup>

1. 사업계획내용

- 가.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 나. 방지시설규모
  - 시설용량 : 24,500m<sup>3</sup>/일

1단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3단계
3,500m <sup>3</sup> /일	3,500m <sup>3</sup> /일	15,000m <sup>3</sup> /일	24,500m <sup>3</sup> /일

- 설치면적 : 39,8000m<sup>2</sup>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아산시 지역경제과 (041-540-2354) 및 금강유역환경청 (042-865-294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산업단지 면적 : 2,021,077m<sup>2</sup>)

다.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1년 1월 ~ 2005년 12월

1단계		3단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3-1단계	3-2단계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 사업지역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 일원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52,150백만원

1단계(백만원)			3단계(백만원)	
1-1단계	1-2단계	2단계	3-1단계	3-2단계
15,130	10,268	9,100	10,500	7,152

- 연간유지관리비 : 3,638.3백만원

1단계(백만원)		
1-1 단 계	1-2 단 계	2단계(백만원)
719.2	1,205.8	2,318

마. 예상원인자 범위

- 삼성전자(주)를 비롯한 아산 T·C지방산업 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오·폐수를 유입시키는 모든 사업자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원인자 부담 200% (1-1단계)
- 원인자 50% 부담 (1-2단계 이후)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가. 열람장소 : 삼성전자(주) (041-544-1260),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40-2354), 금강유역환경청(042-865-2942)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2-22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0호, 1997. 12. 2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4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중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별표의 2002-3-2187란 다음에 2002-3-2188 내지 2002-3-22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2-3-2188	Trimethoxy(2-methylpropyl)silane reaction products with titanium dioxide (CAS No. 220037-19-4)
2002-3-2189	1,1,1-Trimethyl-N-(trimethylsilyl)silanamine hydrolysis products with silica and 3-(triethoxysilyl)-1-propanamine (CAS No. 199876-44-3)
2002-3-2190	Ethyl 2-propenoate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ethenyl chloro acetate (CAS No. 444575-71-7)
2002-3-2191	[총칭명]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alkyl-alkanediol, alkanedi amine, 3-hydroxy-hydroxyalkyl-alkylpropanoic acid and alkanebis(4-isocyanatocyclohexane), block, compd. with alkylethanamine
2002-3-2192	[총칭명] (Dihalogenated pyrimidyl)amino-4-hydroxy-3-(substituted alkyl sulfonyl)arylazo-2-naphthalene sulfonate
2002-3-2193	[[[C,C,C,C-Tetrakis[2-methyl-1-(1-methylethyl)propoxy]-29H,31H-phth alocyanin-C-yl- $\epsilon$ N29, $\epsilon$ N30, $\epsilon$ N31, $\epsilon$ N32] methoxy]carbonyl]ferrocenato(2-)] copper (CAS No. 329968-17-4)
2002-3-2194	1-Amino-4-[[3-[[4-chloro-6-[[3-[[[2-(ethenylsulfonyl)ethyl]amino]carbo nyl]phenyl]amino]-1,3,5-triazin-2-yl]amino]-2,4,6-

- 2002-3-2195 trimethyl-5-sulfophenyl]amino]-9,10-dihydro-9,10-dioxo-2-anthracenesulfonic acid, disodium salt (CAS No. 323195-50-2)
- 2002-3-2196 [29H,31H-Phthalocyaninato(2-)-N29,N30,N31,N32]copper, aminosulfonyl su lfo derivs., sodium salts (CAS No. 90295-11-7)  
[총칭명] Fatty acids, coco, polymers with dibasic acid, dihydroalkenylfuranidone, erythritol and substituted alkanediol
- 2002-3-2197 [총칭명] Bis[(polyalkenylhydroxy)phenyl] alkanolic acid, sodium salt
- 2002-3-2198 Polyethylenepolyamines reaction products with oleic acid (CAS No. 106214-55-5)
- 2002-3-2199 1H-Tetrazol-5-amine (CAS No. 4418-61-5)
- 2002-3-2200 2-Cyano-3,3-diphenyl-2-propenoic acid, 2,2-bis[[[(2-cyano-1-oxo-3,3 -diphenyl-2-propenyl)oxy]methyl]-1,3-propanediyl ester (CAS No. 178671-58-4)
- 2002-3-2201 Mixture of [2-perfluoroalkyl(C=4-16)] ethyl dihydrogen phosphate, bis[2-perfluoroalkyl(C=4-16)] ethyl hydrogen phosphate and tris[2-perfluor oalkyl(C=4-16)] ethyl phosphate (CAS No. 부여 안됨)
- 2002-3-2202 [총칭명] Substituted carbomonocyclic polymer with alkyl aldehyde and alkyl phenol
- 2002-3-2203 Acetyl bromide (CAS No. 506-96-7)
- 2002-3-2204 N,N-Dimethyl-N-tetradecyl-1-tetradecanaminium, hexa- $\mu$ -oxotetra- $\mu\beta$ -oxodi- $\mu\delta$ -oxotetradecaooctamolybdate(4-) (4:1) (CAS No. 117342-25-3)
- 2002-3-2205 Tributyl borate (CAS No. 688-74-4)
- 2002-3-2206 [총칭명] Reaction product of aminosubstituted-hydroxysulfonyloxy alkyl sulfonylsubstituted-ureidoazobenzene sulfonic acid with trihalogenepyrimi dine and partial hydrolysis to the corresponding vinylsulfonyl derivative, mixed alkali salt
- 2002-3-2207 1,3-Diisocyanatomethylbenzene polymer with 4,4' -methylenediphenyl di isocyanate, methyloxirane and oxirane, butanone oxime-blocked (CAS No. 부여안됨)
- 2002-3-2208 Fatty acids, C18-unsatd., dimers, di-Me esters, hydrogenated, telomers with 3-mercaptopropanoic acid, 2-[methyl[(nonafluorobutyl )sulfonyl]amino]ethyl 2-propenoate and octadecyl 2-propenoate (CAS No. 부여안됨)
- 2002-3-2209 4-(4-Hydroxyphenyl)-1(2H)-phthalazinone polymer with bis(4-fluorophe nyl)methanone (CAS No. 152594-75-7)
- 2002-3-2210 4-(4-Hydroxyphenyl)-1(2H)-phthalazinone polymer with 1,1' -sulfonylbis [4-chlorobenzene] (CAS No. 166894-40-2)
- 2002-3-2211 4-(4-Hydroxyphenyl)-1(2H)-phthalazinone polymer with bis(4-fluorophe nyl)methanone and 1,1' -sulfonylbis[4-chlorobenzene] (CAS No. 172402-80-1)
- 2002-3-2212 [총칭명] Dihalogenated pyrimidylamino- $\sigma$ -alkylphenylazo-azoaryl substituted sulfonate, sodium salt
- 2002-3-2213 [총칭명] Dihalogenated pyrimidinylamino- $\sigma$ -alkylamidophenylazoaryl subst ituted sulfonate, sodium salt
- 2002-3-2214 1-Methoxy-1,1,2,2,3,3,3-heptafluoropropane (CAS No. 375-03-1)
- 2002-3-2215 [총칭명] Isocyanatedbenzene polymer with methyl oxirane and oxirane, ethers with alkanol
- 2002-3-2216 2-(Dimethylamino)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1,2-propa nediol mono-2-propenoate, 2-hydroxy-1,2,3-propanetricarboxylate (CAS No. 347886-93-5)

부칙

군산하수종말처리시설처리구역중군산국가  
및지방산업단지내의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부고시제2002-165호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군산하수종말처리시설처리구역중 군산국가 및 지  
방산업단지내 별도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군산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중 군산국가산업단  
지 및 군산지방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  
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  
한 경우 당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  
한 배출허용 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400mg/l  
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 400mg/l이하, 부유물질량  
200mg/l이하, 총질소 200mg/g이하, 총인 10mg/l이하  
로 한다.

2002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부칙

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질소 및 총인 배출허용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환경부고시제2002-166호 ◆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 제2001-40호, 2001. 3. 1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8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중재정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의한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폐수처리 등 사업장의 시설 및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물질”을 “폐수처리, 사업장 시설 및 장치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는 물질”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살충제, 비료 등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에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 등의 화학물질”로 한다.

제4조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금속 및 그 화합물 중 고체로서 고유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로 취급되며, 그 취급과정에서 용융, 증발 또는 용해되지 않는 화학물질”

제5조중 “환경중에”를 “환경으로의”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제2항중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한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제1항중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조제1항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중 각호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중 1의 방법으로 하며, 산정방법에 따른 산정계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지침에 의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를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다음연도 2월 18일”을 “다음연도 4월 30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연도 3월 31일”을 “당해연도 5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조사표 제출사업장을 관할기관의 관계공무원과 함께”를 “관할기관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조사표 제출사업장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다음연도”를 “당해연도”로 한다.

제12조제1호를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로 하고, 동 조제2호를 제3호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취급제한·금지 등 화학물질 관리정책수립

제12조제3호를 제4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4. 각종 국제협약에 의한 화학물질 관리 등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계재생략)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http://www.m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

- ◆ 제정 1999. 1.6 환경부고시 제1998-155호 ◆
- ◆ 개정 2001.3.14 환경부고시 제2001-40호 ◆
- ◆ 개정 2002.11.8 환경부고시 제2002-166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업종) 조사대상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서,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중 “별표 1”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3조(조사지역) 조사는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조사지역을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조사대상화학물질) ①조사대상화학물질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별표 2”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제품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보조원료, 반응가스 등 직접 또는 화학적변화를 통해 제품속에 함유되는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제품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제품생산과정에 사용하는 물질)
4.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처리, 사업장 시설 및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물질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화학물질을 연간 50톤미만 제조·사용하는 사업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조사대상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내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사업장 조정시설 등의 유지에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 등의 화학물질
7. 중금속 및 그 화합물 중 고체로서 고유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로 취급되며, 그 취급과정에서 용융, 증발 또는 용해되지 않는 화학물질

제5조(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연간 조사대상화학물질 별 취급량·용도,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으로의 직접배출량, 사업장 폐기물, 폐수 등에 포함되어 사

업장 외부로 이송되는 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조사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사업자에게 배출량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배포하고 조사대상사업자는 배출량조사지침에 의하여 조사표 또는 조사용PC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7조(조사표)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조사대상사업자가 조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사용PC프로그램을 PC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산정방법 및 산정계수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한다.

제8조(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계수)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중 1의 방법으로 하며, 산정방법에 따른 산정계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에 의한다.

1. 직접측정에 의한 방법
2. 물질수지에 의한 방법
3.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4. 공학적 계산에 의한 방법

제9조(사전교육) ①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표제출대상자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용 PC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사업자가 조사표 또는 조사용 PC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 ①조사대상사업자는 당해연도 자료를 근거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매년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 또는 조사용 PC프로그램디스켓을 검토하여 신뢰성 등 작성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표와 취합결과를 당해연도 5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표의 검토 및 처리)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조사대상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를 검토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조사표 제출사업장을 현지 조사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조사표를 검토·분석하여 유해물질의 적정관리방안과 조사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조사표제출대상자의 기술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조사표의 검토·분석결과를 당해연도 10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표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결과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2. 취급제한·금지 등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예방
4. 각종 국제협약에 의한 화학물질관리 등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